#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10

발의연월일: 2021. 3. 11.

발 의 자: 송석준 · 김형동 · 김상훈

태영호 • 윤창현 • 배준영

최승재 · 유경준 · 이헌승

성일종 • 추경호 • 정경희

이양수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·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,

이에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「형법」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,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금지하며,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,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·추징하도록 하며,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·추징하도록 하며,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

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·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「형법」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함(안 제25조).
- 나.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,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제26조의2 신설).
- 다.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(안 제26조의3 신설).
- 라.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·추징하도록 함(안 제28조제2항).
- 마.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·추징의 적용을 하지 않음(안 제28조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중 "제129조부터"를 "제127조 및 제129조부터"로 한다.

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공공개발 사업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① 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공사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6조의3(준법감시관) ① 공사는 임원 및 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둔다.
  - ②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감사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- 4.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③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, 매년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준법감시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,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8조(벌칙) ①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 다.
  - ③ 제2항의 몰수 또는 추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혅 행 아 제2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2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의제) -----한 법률」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 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 ----제127조 및 제129조부터--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 무워으로 본다. <신 설> 제26조의2(공공개발 사업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① 공 사의 임직원은 공<u>공개발 사업</u>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. ② 공사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이 관 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 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<u><신 설></u>

다.

- 제26조의3(준법감시관) ① 공사는 임원 및 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 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 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를 둔다.
  - ②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 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.
 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
  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  - 4.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
  - ③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공사 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

제28조(벌칙)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진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거래 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, 매년 조사결 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준법감시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,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(벌칙) ①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>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 는 추징한다.

> ③ 제2항의 몰수 또는 추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